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거 창 군 의 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3-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023-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임차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3-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15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표주숙,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이유

현행 고독사 예방의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에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하여 그들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예방,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바.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08. 08. ~ 08.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이하“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 사업
2. 긴급의료,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
3.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5.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운영 지원
6.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 전의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

발의일자	2023. 8. .
발 의 자	신중양,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의 편익을 위하여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되는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다.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대해 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비군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08. 08. ~ 08.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참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훈련을 위해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 차량운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8사단 제8962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거창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거창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예비군 수송을 위해 거창군에서 훈련장까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은 거창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

발의일자	2023. 8. .
발 의 자	김향란,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김향란,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급격한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각종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녹색 성장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을 정함(안 제17조)

나.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을 정함(안 제18조)

다. 녹색교통 활성화, 차 없는 날 운영,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정함(안 제19조~제21조)

라. 탄소흡수원 등 확대,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을 정함(안 제22조·제23조)

마.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평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정함(안 제24조~제26조)

바. 정의로운 전화 대책의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08. 08. ~ 08.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참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7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군수는 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군수는 탄소저감 청정단지(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세대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등 탄소저감 기술을 적용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수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다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차 없는 날 등 운영) ①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심의 차량 운행 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4조(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평가) 군수는 기후변화가 사회·자연환경, 시민의 건강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25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6조(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군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7조(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부분·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현황 및 실업자 지원
3.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17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군수는 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군수는 탄소저감 청정단지(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세대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등 탄소저감 기술을 적용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수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제20조(차 없는 날 등 운영) ①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심의 차량 운

		행 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없는 날 및 차없는 거리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 설>	**제24조(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평가)** 군수는 기후변화가 사회·자연환경, 시민의 건강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신 설>	**제25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신 설>	**제26조(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군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제27조(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부분·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현황 및 실업자 지원 3.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

발의일자	2023. 8. .
발 의 자	신중양,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33340호, 2023. 3. 21.일부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차령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08. 11. ~ 08.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의 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이하 “별표 2”라 한다)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차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2. 최대 2년까지만 연장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과 절차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 종	사 업 의 구 분		차 령
승용자동차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	개인택시(경형 · 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 · 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경형 · 소형 · 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 · 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